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허7880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이동환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한

변 론 종 결 2019. 6. 14.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9. 4. 2018당66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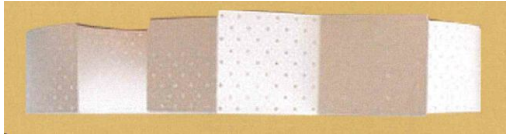
주문과 같다.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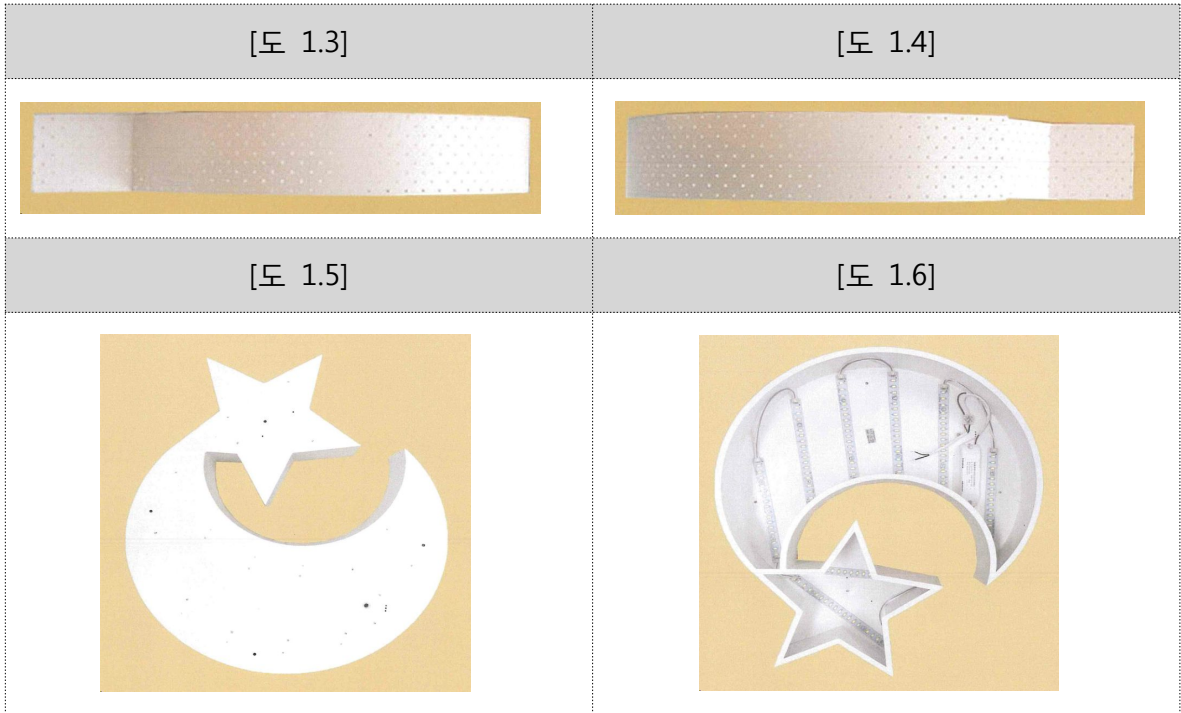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호증의1, 2)

-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5. 9. 16./ 2016. 5. 25./ 제856626호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천장¹⁾등 본체
- 3) 주요 내용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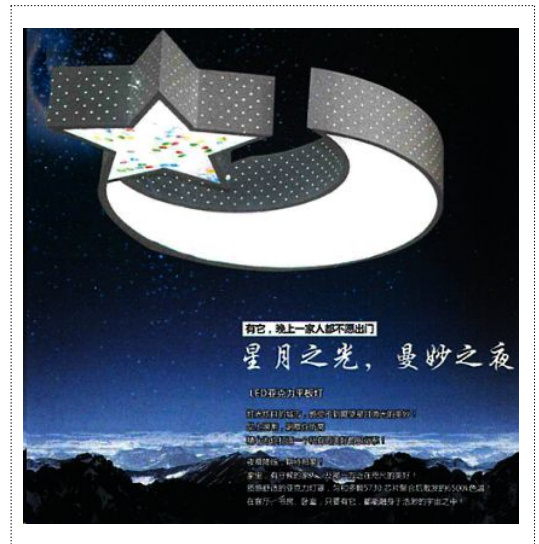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LED 또는 기타 전구를 광원으로 하여 발광되는 천장등의 본체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천장등용 커버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것이며, 천장직착 등 외에 펜던트등, 천장매립등, 벽등의 본체로도 사용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천장등용 본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 1.1]	[도 1.2]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공보(갑2호증의2)에는 "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올바른 맞춤법에 따르면 "천장"이므로 이하 "천장"으로 고쳐 쓴다.



나. 선행디자인(갑4호증)2)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의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스타 문 천장 램프'에 관한 이미지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3. 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인터넷 쇼핑몰 D에 게시된 조명등 사진(을3호증)을 선행디자인 2로 특정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에 의하더라도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2019. 5. 31.자 준비서면(11면)에서 을3~5호증을 증거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취지라고 진술함으로써, 선행디자인 2(을3호증)에 기한 신규성 부정 주장을 철회하였다. 한편, 선행디자인은 실제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이미지이나,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 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8당663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8. 9.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대상물품의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1호 증)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되는 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1) 선행디자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객관적인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요부인 별과 초승달의 독특한 결합 형태에 의하여 선행디자인과 차별화되는 심미감을 주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지 않다.

나. 피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선행디자인에 대한 댓글 4건의 게시일자는 2013. 4. 19.부터 2013. 4. 22.까지

걸쳐 있고, 그 후 댓글의 게시일자가 일부 변경된 것은 사이트 운영시스템상의 기술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선행디자인은 적어도 2013년에는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가) 선행디자인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의 판매 사이트에 게재된 '스타 문 천장 램프'에 관한 것인데, 위 게시물 자체에는 게시일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갑4호증).

나) 다만, 선행디자인에는 오른쪽 표와 같이

댓글 4개가 달려 있는데, ① 아이디가 "E"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1')가 2013.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아주 작은 소녀입니다(果然还是很小女生)"라는 내용이고, ② 아이디가 "F"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2')가 2013. 4. 19. 작성한 것으로



23,55,33.	amanpahri (喜欢, 认为值得)	真漂亮.	2013-04-22
23,55,33.	norez (喜欢, 认为值得)	不错哦	2013-04-21
23,55,33.	hc_wangxiaojian (喜欢, 认为值得)	这个是我一直想买的挺精致的http://store.***.com/shop/view_shop.htm?tracelog=***ddp.	2013-04-19
23,55,33.	猫窝鸡窝 (喜欢, 认为值得)	果然还是很小女生.	2013-04-19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항상 사고 싶었던 것(这个是我一直想买的挺精致的)"이라는 내용이며, ③ 아이디가 "G"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3')가 2013. 4. 21.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나쁘지 않다(不错哦)"라는 내용이고, ④ 아이디가 "H"인 사용자(이하 '사용자 4')가 2013. 4. 22.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은 "정말 예쁘다(真漂

亮)"라는 내용이다(갑4호증).

2)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먼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4. 1.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의 판매 사이트를 재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행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1, 2의 댓글 작성일이 2013. 4. 19.로부터 오른쪽과 같이 2013. 4. 18.로 변경되어 있다(갑14호증의1). 그런데 이와 같이 작성일자가 변경된 원인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4호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1~4에 의한 댓글이 2013. 4. 19.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사용자 1의 댓글은 그 내용이 "아주 작은 소녀입니다(果然还是很小女生)"라는 것으로서 선행디자인 제품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에서 판매되던 미니철제상자 제품에는 사용자 1이 해당 제품을 구입하고 2012.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이 게시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아주 작은 소녀입니다(果然还是很小女生)"라는 것이다. 그런데 판매 제품과 그 댓글 내용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선행디자인에 달려있는 사용자 1의 댓글은 미니철제상자 제품에 대한 댓글이 그대로 복사되어 게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갑5호증의1, 2).



다) 또한 위 1)의 나)항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2의 댓글에는 "I"와 같은 URL이 부가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 2가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에서 판매되던 3단 서랍보관함 제품을 구입하고 2012. 4. 19.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댓글에 부가된 URL과 동일하고 그 댓글의 내용도



서로 동일하다(갑6호증의2). 그런데 일반적으로 댓글을 작성할 때 직접 URL을 기재하거나 이를 복사하여 부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점과 각 댓글에 부가된 URL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용자 2의 댓글은 다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어 게시된 것이고, 그 과정에 URL까지 복사되어 부가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나아가 선행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3의 댓글과 동일한 내용이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에서 판매되던 고급 우레탄상자에 대한 2012. 4. 21.자 댓글로 표시되어 있고(갑7호증의2), 선행디자인에 대한 사용자 4의 댓글과 동일한 내용이 인터넷 쇼핑몰 '下午(하오)'에서 판매되던 면가방에 대한 2012. 4. 22.자 댓글로 표시되어 있다(갑8호증의2).

마) 이와 같이 선행디자인에 대한 댓글의 게시시기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로부터 선행디자인 자체의 게시일자를 추정할 수 없다. 더욱이 그 댓글의 내용

이 선행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지칭하고 있지 않아 선행디자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댓글을 선행디자인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댓글이 게시된 이후에 게시물의 내용이 선행디자인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인 2013년경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진희